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20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일시적 자격요건 미달 사항, 산림복지지구의 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 청취 면제 조건, 산림복지지구 신청 및 지정·변경 관련 구체적 사항, 기부금품의 접수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기준 완화(안 제19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기준에 해당되는 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취소 제외

나.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기준 완화(안 제26조)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기준에 해당되는 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60일 이내이거나,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취소 제외

다. 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관련 사전 절차 면제 사항 규정(안 제29조)

- 산림복지지구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불필요

라. 산림복지지구 신청, 지정 및 변경 관련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9조)

- 지정·변경 신청 시 신청서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첨부하여 제출하고, 전문위원 활용 적합성 검토하며, 위원회 개최하여 심의

마. 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관련 사항 포함 고시(안 제30조)

- 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시에는 산림복지단지 사업시행자, 산림복지단지 위치 및 면적,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 포함하여 고시

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방법 등 규정(안 제45조의2)

- 진흥원에서 기부금품 접수한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 발급
- 진흥원은 기부자가 기부금품 용도 지정 시 그 용도로만 사용
-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의 열람을 허용

사. 지도·명령·조사 권한 위임 대상에 ‘통합특별시장’ 포함(안 제47조)

-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26.7.1.)에 따른 후속조치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에 따른 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2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5에 따른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5에 따른 시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제29조의 제목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 지

정 및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7항에”로, “제2항제3호”를 “제7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8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9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산림복지지구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림복지지구 지정신청서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된 산림복지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산림복지지구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지정신청서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제15조의 전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 대상지역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2. 대상지의 자연환경, 산림자원 등 법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3.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 조사 및 현장 조사

4. 위원회에 제공할 의견서 작성

④ 전문위원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였을 때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으면, 위원회를 개최하여 산림복지지구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4항제3호”를 “법 제27조제4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산림복지단지 사업시행자
2. 산림복지단지 위치 및 면적
3.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2항제6호”를 “법 제33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생략)	제19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에 따른 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생략)	제26조(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2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5에 따른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제2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신
설>

<신 설>

<신 설>

2. 별표 5에 따른 시설의 이전 등
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
는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제29조(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 지
정 및 변경)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란 산림복지지구 면
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림
복지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림복지지구 지정신청서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
지 조성계획을 첨부하여 산림청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된 산
림복지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산
림복지지구 지정신청서 또는 변
경지정신청서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제15조의 전문위원에게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해
야 한다.

1. 대상지역 및 사업계획의 타당

<신 설>

<신 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

성 검토

2. 대상지의 자연환경, 산림자원

등 법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3.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 조사 및

현장 조사

4. 위원회에 제공할 의견서 작성

④ 전문위원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였을 때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으면, 위원회를 개최하여 산림복지지구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⑥ (현행 제1항과 같음)

⑦ 제6항에 -----

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 4.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 제3호의 공람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 사항) 법 제2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명칭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또는 지정 변경일

-----.

1. ~ 4.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에 ----- 제7항 제3호-----
-----.

⑨ ----- 제8항 -----
----- 제출해야 -----
----- 통보해야 -----.

⑩ ----- 제9항-----

----- 통보해야 -----.

제30조(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 사항) 법 제27조제4항제4호-----
-----.

1. 산림복지단지 사업시행자
2. 산림복지단지 위치 및 면적
3.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

4.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자

제36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삭제>

제36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33조제1항제7호-----

-----.

1. ~ 4.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

흥원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
 라 법 제26조에 따른 산림복지서
 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지도·명령 및
 조사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국립
 자연휴양림관리소장,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
 임한다.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복
 지시설 외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
 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
 지전문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명령 및 조사: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
 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
 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

 ----- 특별시장·통
 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 -----
 -----.

1.·2. (현행과 같음)

3. -----

 ----- 특별
 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u>· 도지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 ③ (생 략)	<u>·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u>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연 락 처	(042) 481 - 1841